

비식별 처리 방법의 표준 개발 현황

임형진 금융보안원 팀장

1. 머리말

본고에서는 금융보안원에서 2016년 신규 과제로 제안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비식별 처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내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 처리를 위한 비식별 처리 방법의 표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요 회의 내용

2019년 8월 ITU-T SG 17 정기회의에서는 2017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표준 개발 중인 ITU-T Draft Recommendation X.fdis(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의 사전승인을 위해 제출한 기고서를 검토하고 초안에 반영하였다. 본고는 지난 6월의 Q7 RGM 및 TSB로부터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비식별 처리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개발을 위한, 비식별 처리 개요, 프레임워크, 비식별 데이터 활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 (6절) 데이터 생명주기, 비식별 상태, 고려사항
- (7절) 사전검토, 비식별 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 (8절) 배포 모델, 비식별 된 데이터의 상태, 배포 모델과 데이터 상태의 관계

이전 회의를 통해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표준에는 비식별(De-identification) 용어 정의, 비식별 처리 생명주기, 비식별 데이터 제공 형태 등 비식별 처리에 대한 기본 모델을 정의하였고, 비식별 처리를 위한 4가지 단계와 각 단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비식별 처리를 위한 단계는 우리나라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정부부처합동, 2016.6월)」의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서 기본 처리 절차와 단계에 대한 골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은 ITU-T Draft Recommendation X.fdis(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의 사전승인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표준상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시간을 요구하여 이번 정기회의에서 최종 표준을 위한 사전 승인을 연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표 1> 사전 승인 요구 배경

반대국(소속기관)	주요 의견
영국(Article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화와 가명화 등의 용어를 포함한 내용이 GDPR 또는 관련 가이드와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승인을 반대 ■ 차기 회의에서 직접 검토 결과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미국(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에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개 사용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우 민감한 이슈라서 미국 국가 차원에서 HIPAA(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에 대조 및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이번 회의에서의 승인을 반대 ■ 단, 검토 후의 의견을 메일로 전달해주기로 함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과 미국이 연기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무조건 동의

이에 한국 대표단에서는 미국, 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회의(2020.3월)에서 표준 제정을 위한 승인 절차를 재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식 기고서 형태의 의견 제출 전, 각 국가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다음 정기회의에서 최종 표준 승인되도록 협의 예정이다.

3. 맺음말

본 회의에서 ITU-T Draft Recommendation X.fdis(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의 사전승인 채택 시기가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로부터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국내에서도 법률적 근거여부로부터 비롯되어 비식별 및 익명화라는 용어정의에 대하여 수년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및 유럽 등 국가 별로도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비식별 대상 방법 절차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향후 ITU-T Draft Recommendation X.fdis가 주요국들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세계 최초 비식별 처리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ISO/IEC 20889의 역할처럼 X.fdis가 세계 최초의 비식별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자국의 관련 법률들에 근거하여 본 표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어떤 경우에는 국내 기준과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